

특구 내 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조달청 벤처나라 '26년 모집 일정안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특구 내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 및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특구육성사업 및 과학벨트지원사업 수행기업 등을 대상으로 조달청의 공공조달시장인 ‘벤처나라’에 지정 희망기업을 추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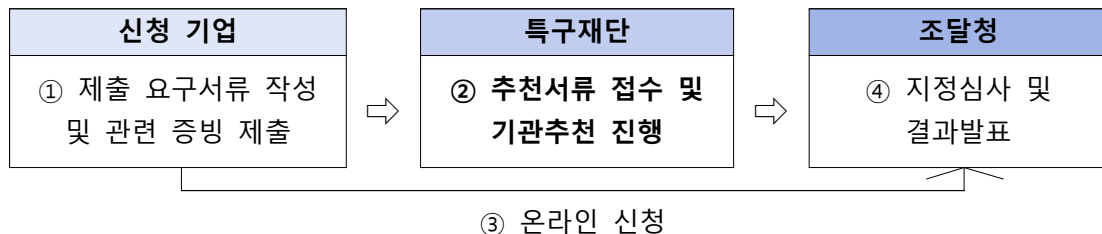
< 조달청 벤처나라 >

기존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서 거래가 어려운 신기술, 융합·혁신제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 판매할 수 있는 전용몰로서, 벤처·창업기업의 소비재 완성품을 취급

※ 2026년 특구재단의 9월(10월 심사) 추천기업을 모집합니다.

I 주요내용

- ☐ (기업추천)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특구육성사업 및 과학벨트 지원사업 수행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상품을 발굴하여 벤처나라 지정 신청 시 기술평가 항목 가점부여 혜택을 제공



II 신청대상

- ☐ (공통요건) 공공기관에 납품 가능한 소비재 완성품 또는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기업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

* 해외 OEM은 지정신청 불가능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

* 특구제단 추천 후, 조달청에 온라인 신청 시 벤처기업 확인서 제출(지정일 기준 벤처나 규정 제7조의 2, 5항)

-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확인

《2026년 벤처나라 지정신청 관련 안내사항》

- ① (지정신청하려는 품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국내 OEM인 경우 지정 신청 및 상품등록 허용하나, 수요기관이 1천만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 직접생산 확인이 되어야 하며 직접생산이 없는 경우 주문 불가
② 창업기업확인서 첨부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기업' 제품으로 납품 가능
③ 청년기업(만 39세, 대표 또는 대표이사 기준) 우대사항 - 지정심사시 가점 1점 부여

- (특구재단 추천요건)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특구육성사업 및 과학벨트지원사업 수행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제외대상)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따른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신청 제외 대상(제6조)
▶ 휴·폐업, 부도, 파산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 ▶ 단가계약 또는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또는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한 물품 및 서비스와 동일한 물품식별번호 상품 ▶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가충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 등 제6조에 명시한 사유 ▶ 지정취소 후 6개월 이내에 벤처창업기업제품으로 재신청된 경우 ▶ 동일한 세부품명의 상품이 벤처창업기업제품으로 지정된 적이 있는 경우(단, 기존지정기간이 6년 미만인 상품은 지정신청 가능하나, 이때 지정기간은 6년에서 기존 지정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으로 함)

* 보유하신 상품의 조달청 등록가능 여부는 조달청에서 결정가능한 부분이니, 조달청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 부탁드립니다. (3P 문의처 참조)

III

추진일정 및 신청방법

- (추천일정) 2026년 2월 ~ 2026년 12월 중 분기별 1회, 연 총 4회 추천

- '26년 4분기 추천서류 접수기간: 26.09.02.(수) ~ 09.23.(수) 1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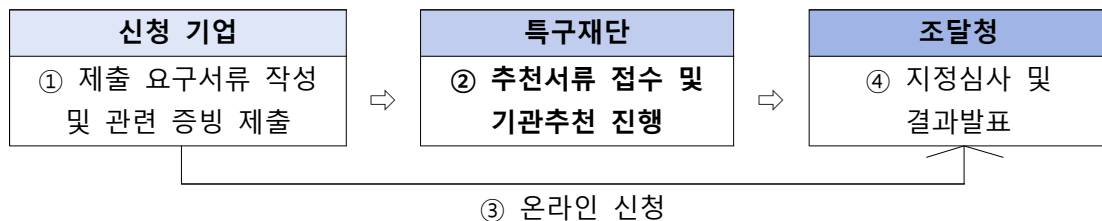
신청 단계	상세 일정
특구재단 추천서류 접수	‘26.09.02.(수) ~ 09.23.(수) 14:00
기업 온라인신청	‘26.10.01.(목) ~ 10.13.(화) 18:00
조달청 지정심사	‘26.10.16.(금) ~ 10.30.(금)

☐ (추천기업 신청절차)

- ① 특구재단 담당자를 통해 벤처창업기업제품 추천요청
- ② 제출 요구서류 작성 및 관련 증빙 특구재단에 이메일 제출
* 관련 제출 서류(붙임문서)를 참고하여 구비
- ③ 온라인 신청기간 동안 벤처나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요청’ 후 ‘승인요청’ 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④ (상품 등록) 지정된 제품은 추후 조달청 안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물품목록번호, 벤처나라 상품등록 등 등록절차 진행



□ (접수 및 문의처)

제도, 온라인신청 및 기타 문의 (등록가능 상품여부 등)	조달청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지정관련) 02-590-8850 (제도, 등록, 규격추가, 연장 등) 042-724-7193, 7506, 7665
추천신청 서류접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총괄본부 송주영연구원	042-865-8955 sjy9179@innopolis.or.kr

- 3 -

IV 특구재단 추천 및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 시 이점

- (특구재단 추천에 따른 혜택) 특구재단 추천 기업은 벤처나라 입점 신청 시 기술평가 가점이 부여 됨

< 특구재단 추천 시 혜택 >

기업 구분	기술평가	품질평가	비고
연구소기업	가점부여	*조건부 면제	*별도의 기술·품질 평가 면제대상에 해당 시 기술·품질 평가가 면제되며,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시 조달청에 의해서 평가 진행
첨단기술기업	가점부여	조건부 면제	
특구육성·과학벨트 지원사업 수행기업	가점부여	조건부 면제	

-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 시 이점)

-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증서(벤처나라 상품 등록 완료 후 직접 온라인 출력 가능), 인증마크 제공(벤처나라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벤처나라 홍보 카다로그 제작·배포*, 온온프라인 홍보, 상품 동영상 제공 등
 - * 홍보 카다로그 제작·배포는 매년 예산사정 및 관련 부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벤처나라 등록업체 중 실적, 기술 및 품질 등을 고려하여 대상업체를 조달청이 자체 선별
- 나라장터 엑스포 개최 시 벤처나라 전용 부스 운영
-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벤처나라 실적 기업 신인도 가점 1점 부여
- SGI서울보증의 이행보증보험 2년간 5억원의 무담보 보증보험 제공

참고1 신청서류 및 지정신청 방법

- (선택사항 - 추천기관 추천) 추천기관별 별도 모집 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추천기관 접수처에 추천기관이 요구하는 신청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
 - 추천기관 추천일(공문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지정신청 완료한 업체에 한하여 가점 2점 부여
 - (벤처나라 온라인 신청) 모든 서류는 'PDF 파일형식'으로 벤처나라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시 각 항목별 첨부파일(10Mb제한) 등록
 - (필수) 지정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온라인 신청서식)
 - (필수) 지정 신청서(온라인 신청서식)
 - (필수) 상품설명서(온라인 신청 시 서식 제공)
 - (필수) 법정 및 품질 인증제품 납품확약서(온라인 신청 시 서식 제공)
 - (필수) 사업자등록증(사본 첨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본첨부)
 - * 법인등기부등본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 벤처기업 확인서(벤처기업인 경우 제출), 창업기업확인서(보유하고 있을 경우 제출)
 - 기술 또는 품질 평가 면제 대상인 경우 관련 소명 자료*
 - * 인증서 사본 또는 관련 종합평가보고서(예 : 기술성공확인 공문, 인증결과 공고 등)
 - * 기술 또는 품질평가면제 대상은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8조 내지 제10조 확인
 - 평가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기술·품질 평가 증빙자료
 - * 기술 평가 증빙자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이 있는 경우 등록원부 등본 및 등록공보 사본 (등록원부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되며, 특허청장 직인이 날인되어있어야 함. 특허실용신안 등록권리자는 법인의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전용실시권자인 경우 실시지역은 '대한민국', 실시내용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제2조제3호에 규정한 '일체의 실시행위'여야 함. 신청인은 전용기술의 권리자가 공동권리자인 경우 [붙임 4-서식]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공동권리자가 대기업인 경우 해당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 주문자상표부착위탁생산(OEM) 상품의 경우 기술 평가 증빙자료 필수 제출
 - * 품질 평가 증빙자료 : 품질 인증서 사본 또는 인증 관련 종합평가 보고서 및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단 인증서, 공인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 별지 제호 서식의 품질관리 계획서)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KC인증, 형식 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 적합 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 *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인증의 경우 반드시 사전 확인 후 관련 인증 필수 제출
- ※ 온라인 신청 시 '요청' 후 '승인요청' 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 붙임 서식 및 벤처나라 홈페이지 참고 (벤처나라: <http://venture.g2b.go.kr/>)

참고2

평가 면제 대상

□ 기술·품질평가 면제 대상(관련규정 제8조)

1. 성능인증(EPC) 제품
2. 신제품(NEP)
3.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GS) 제품
4. 신기술(NET) 제품(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5. 녹색인증제품
6. ICT 융합 품질인증제품
7. 창조경제혁신센터 BE-GOODS 지원사업 선정제품
8. 기타 조달청장이 별도의 기술·품질평가 면제를 인정한 제품
(추천기관에서 육성하는 신기술 산업 제품 또는 추천기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제품 등에 대해 평가 면제 여부를 벤처나 담당과장과 협의 가능)

□ 기술평가 면제 대상(관련규정 제9조)

1.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2. 산업융합품목 지정 제품
3. 공공기관 개발선정품(단,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한함)
4. 성과공유 기술개발 과제(공공부문)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단,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한함)
5. 기타 조달청장이 별도의 기술평가 면제를 인정한 제품
(추천기관에서 육성하는 신기술 산업 제품 또는 추천기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제품 등에 대해 평가 면제 여부를 벤처나 담당과장과 협의 가능)

□ 품질평가 면제 대상(관련규정 제1조)

1. 우수재활용인증제품(GR)
2. 환경표지(환경마크) 제품
3. 성능인증(K마크) 제품
4. 고효율에너지 인증 표시 제품
5. 품질보증조달물품
6. 지능형로봇 품질인증(R마크) 제품
7. 보건제품 품질인증(GH) 제품
8. 부품소재 전문기업 신뢰성 인증 제품
9. 기타 조달청장이 별도의 품질평가 면제를 인정한 제품
(추천기관에서 육성하는 신기술 산업 제품 또는 추천기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제품 등에 대해 평가 면제 여부를 벤처나 담당과장과 협의 가능)